

남 양 주 시 보

제0000호

남양주시 고시 제2025-514호

제2기 남양주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 결정 고시

남양주시 도시지역 내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에 따라 수립된 ‘제2기 남양주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’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25. 12. 11.

남 양 주 시 장

1. 계획의 개요

가. 계 획 명 : 제2기 남양주시 도시지역 빈집정비계획

나. 계획목적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라 빈집의 효율적 정비 및 관리를 위한 빈집정비계획 수립

다. 계획 범위

1) 공간적 범위 : 남양주시 도시지역 내 빈집

2) 시간적 범위 : 2026년~2030년(5개년)

3) 내용적 범위

가) 빈집정비의 기본방향

나)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매입계획

다) 재원조달계획

라) 빈집 실태조사 결과 등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

라. 계획의 법적 근거 :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4조

남 양 주 시 보

제0000호

2. 주요 내용

가. 빈집정비계획 수립 대상(62호)

(단위 : 호)

구분	1등급	2등급	3등급	합계
단독주택	13	9	5	27
공동주택	35	—	—	35
합계	48	9	5	62

나. 빈집정비계획

1) 빈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매입계획

(단위 : 호)

구분	철거		보수		안전 조치	매입 계획	합계
	단순 철거	철거 후 공공 활용	단순 보수	보수 후 공공 활용			
개소	3	1	—	—	—	—	4

2) 관리계획(빈집 전체)

- 연 1회 정기 점검 실시(건축물 상태, 위험 요소 등 확인)
-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요청(안전 펜스 및 주의 안내문 등 설치)
- 필요 시 관할 경찰서, 소방서와 협의하여 방범, 방화, 방재 대책 마련 등

다. 재원조달계획

[단위 : 호, 천원]

구분		1차연도 (2026년)	2차연도 (2027년)	3차연도 (2028년)	4차연도 (2029년)	5차연도 (2030년)	합계
철거	호수	—	1	—	2	—	3
	금액	—	20,000	—	40,000	—	60,000
철거 후 공공 활용	호수	—	1	—	—	—	1
	금액	—	30,000	—	—	—	30,000
안전조치 (울타리설치)		—	—	—	—	—	—
합계	호수	—	2	—	2	—	4
	금액	—	50,000	—	40,000	—	90,000

※ 철거 예산 : 호당 최대 20백만 원/ 공공활용 시 호당 최대 30백만 원/ 자부담 10% 별도

라. 빈집밀집구역 : 해당없음

남 양 주 시 보

제0000호

3. 관련자료 : 게재생략(열람 장소에 비치)

4. 열람장소

○ 남양주시청 제1청사 도시재생과(☎ 031-590-8281)